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경제안보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경제안보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트럼프 대통령, 국가별 상호관세율 관련 서한 공개
- 트럼프 대통령,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미 상무부,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 결정
- 미 상무부, 태양광 및 무인항공기 관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의견수렴 공고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안수린 전문관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01

1. 개요
2. 중국 드론 산업의 부상 및 미측 안보 우려
3. 美 정부의 對中 드론 규제
4. 다자체제 드론 수출통제 동향
5.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 정책
6.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김단비 전문관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11

1. 배경
2. 광물자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향후 전망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황지현 전문관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16

※ Pasamehmetoglu, K. (2025.5.14.). The United States' role in managing the nuclear fuel cycle. Issue Brief. Atlantic Council.

1. 서론
2.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학
3.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 및 한계
4. 정책 제언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트럼프 대통령, 국가별 상호관세를 관련 서한 공개
- 트럼프 대통령,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미 상무부,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 결정
- 미 상무부, 태양광 및 무인항공기 관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의견수렴 공고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전문관

요약

■ 현대전 핵심 무기체계로 부상 중인 드론

-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에서 드론이 정찰·타격·전자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저비용·비정형 전술의 대표 무기체계로 부상
 - 민간용 드론의 군사 전용 확대, 이중용도(dual-use) 통제 필요성 증대

■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산 드론 확산과 안보 우려

- DJI, Autel 등 중국 업체가 민간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러시아·중동 전장 등에서 실전 활용 사례 증가
 - 美 정부는 中 드론의 데이터 유출 및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을 통한 군사 전용 가능성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
- * (美 국무부 정의) 2049년까지 인민해방군(PLA)을 세계 최강 군대로 만들기 위한 中 공산당의 전략으로, 과학기술 성과가 민군 양용으로 활용되도록 체계를 재편하는 방식

■ 미국의 對中 드론 규제 강화 및 법제화 추진

- 2020년(트럼프 1기) 이후 부처별(상무·국방·재무부 등) 수출통제, 투자 제한, 행정명령 등 다층적 조치 시행
 -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DJI, Autel 등 중국산 드론 제조사에 대한 국가안보 평가 의무화 조항 포함
- * 美 국방 예산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정책 법률

■ 국제 다자 수출통제 체제 및 우방국 공조 강화 추세

-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MTCR), 바세나르 협정(WA), 컨센서스-1을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및 핵심 부품까지 통제 범위 확대
 - ※ 중국은 MTCR·WA 비(非)가입국으로 제도적 공백 존재

■ 중국의 수출통제 법·제도 강화 대응

- 미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수출통제법」 제정(2020년), 이중용도 규정 개정(2023~24년), 핵심 부품에 대한 선별적 수출통제 강화(2024.7월)
 - 민간용은 일부 완화, 군사용 부품은 강화하는 차별적 접근 확대

■ 시사점: 우리의 기술안보 대응 역량 및 수출통제 체계 정비 필요

- 이중용도 분류체계 정비,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 다자체제 내 통제 기준 조율, 민관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할 필요

1. 개요

-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등에서 정찰·타격·전자전 수행을 통해 비대칭 전력 구조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며, 현대전 양상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

<표> 전장 내 드론 활용 사례

-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아제르바이잔 vs 아르메니아, 2020년) : 아르메니아 방공망 무력화, 탱크지휘소 등 표적 선제 타격으로 단가가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장비를 파괴하며 전장 우위 전환에 기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 정찰, 실시간 타격 유도, 자폭 드론으로 사용
 (러→우)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이란제 Shahed 드론(중국산 전자부품 비중 약 80%,) 대량 공격
 (우→러) DJI 매빅(Mavic) 등 상용 소비 드론을 ISR(정찰) 및 FPV(1인칭) 자폭 드론으로 개조, 지상군 연계 실시간 정찰 및 타격 임수 수행에 활용
 ※ 中 해관총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중국 드론 수입액('23년) 6,6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배 증가 / 동 기간 완제품 수입 59.4% 및 부품 수입 383.8% 증가
- **후티 반군 - 홍해 민간 선박 공격**(2024년~현재) 정찰 및 타격 유도, 자폭 드론으로 상업 항로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 /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중국산 부품 기반 자폭 드론을 활용해 홍해를 향해 중인 민간 선박 및 美·英 해군 함정 지속적으로 공격
 ※ 후티 반군은 약 \$2,000달러 수준의 드론으로 美 해군 이지스함을 반복 공격 / 미국은 200만 달러 상당의 요격미사일로 대응 → 저비용 드론이 고가 무기체계를 소모시키는 전형적인 비대칭 전력 운용 사례로 평가
- **이스라엘-하마스 및 이란 연계 세력 간 충돌**(2023.10월 / 2025년~) 하마스와 이란 연계 무장세력(예, 헤즈볼라, 후티)은 소형 자폭 드론 및 장거리 정찰 드론을 활용해 이스라엘 주요 군사기지·민간 지역을 기습 공격
 (이스라엘→하마스/이란) 상시 공중 ISR 체계 기반 드론을 정찰, 타격 유도, 실시간 대응에 투입하며, 민간 드론(DJI 등)을 도시 정찰 등 보조 임무에 활용중

출처: 저자 종합 정리

- 민간용 드론의 군사 전용 확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필요성도 동시에 부각
 ※ 특히 DJI 드론은 정찰·자폭용 개조가 용이해 비정규전, 테러전 등 비대칭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이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다수 발견

2. 중국 드론 산업의 부상 및 미측 안보 우려

- 中 정부, 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국 제조 2025’ 및 ‘군민융합(MCF)’ 정책을 통해 집중 육성 / 기술 자립 및 세계시장 지배를 목표로 두고 ▲보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전방위 정책 지원 제공

- DJI, Autel Robotics 등 주요 드론 업체는 정부 지원에 기반해 급성장,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 선도

- 美 하원 중국특위 물레나르 위원장, “中 DJI가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 약 80% 점유 및 핵심 부품 대부분 중국산”라며, 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비시장적 지원에 대해 “불공정 경쟁으로 美 기업 고사 위기”라고 경고(美 하원 중국특위 中 드론 관련 청문회 (2024.6.26.))

- 美 정부는 최근 전쟁, 무역충돌 지역에서 中 민간 드론의 군사 전용 사례를 보며, 상업용 드론마저 군사안보 위협 요소로 인식

※ 드론 기체를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드론 산업은 핵심 부품의 약 80~90%를 중국産에 의존

- 美 국토안보부(DHS), 사이버보안청(CISA), 연방수사국(FBI)은 DJI 등 중국산 드론이 미국 주요 기반시설, 군사기지 등 민감 지역의 영상 위치·데이터 수집 및 중국 본토 서버로 전송 우려 지속

※ 美 약 600여 개 연방·지방기관들이 DJI 드론을 운영 중이며, 실시간 데이터 전송 리스크 제기

3. 美 정부의 對中 드론 규제

- 중국산 드론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민감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美 정부는 기술·안보·산업 측면에서 다층적 규제 체계 구축중

※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DJI는 날개 달린 틱톡(TikTok with wings)”이라며, “동 사가 中 공산당에 美 핵심 기반시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2024.12.17. VOA)

- 美 드론 규제 조치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며, 대상과 범위는 ▲기술 수준 ▲용도(민간/군사) ▲수출대상국 ▲제재 대상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결정

- (상무부)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드론 및 관련 부품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사전 허가 또는 면허 제한 대상으로 규정

- 특히 DJI, Autel 등은 Entity List에 등재되어 사전허가 없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 (국무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군용 드론·고성능 항공기 제어 시스템의 해외 이전 규제 / 방산 기술 또는 군사 전용 구성요소 포함 시 수출 제한

- (재무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제재 대상국(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및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목록에 포함된 개인·단체(entity)에 드론, 부품, 소프트웨어, 항법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의 수출 전면 금지

- (행정부(백악관)), 행정명령(13959, 14032 포함)을 통해 중국 드론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조치 발동

(최근 동향)

■ CISA-FBI, 중국산 드론 관련 사이버보안 지침 공동 발표(2024.1.17.)

* Cybersecurity Guidance: Chinese-Manufactured UAS

- (배경) 중국의 국가정보법 등 법률에 따라 기업이 정부에 데이터 제공 의무를 지며,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및 민감 정보 노출 우려
 - (권고 사항) 보안-설계 준수한 미국산 드론 사용, 암호화 통신 사용 의무화(데이터 유출 및 침입 위험 완화) 등

■ 美 의회는 초당적으로 「2025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2024.12.)시켰으며, (NDAA 내) 중국산 드론 규제 조항 포함

- 중국산 드론 제조사(DJI, Autel 등)에 대해 1년 내 국가안보 평가 의무화
 - ※ (평가 기준) 영상데이터 보안, 중국 서버 연계 가능성, 기반시설 접근 위험성 등
 - * Autel은 산업용·공공안전용 시장을 중심으로 DJI의 대체재로 빠르게 부상 중
 - 美 FCC, DHS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이 평가 / (미이행 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Covered List'*에 등재 → 등재될 경우 미국 내 인증, 판매, 설치 등 제한되거나 금지
 - * 美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한 목록
 - (배경) DJI 및 Autel가 제조한 드론이 미국 내 기반시설(전력, 통신, 교통 등)을 촬영한 영상·데이터가 中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 제기
 - ☞ 이러한 데이터가 중국의 군민융합(MCF) 전략을 통해 중국 군사력 강화 또는 첨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 Rick Scott 상원의원, “中 국가보안법에 따라, 모든 중국 기업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중국의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과 연결되어, 수집된 민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 언급 (2024.2월)

■ 美 상무부, UAS 관련 ICTS 공급망 보호 규정* 사전입법예고 발표(2025.1.3.)

* Securing the ICTS supply chain: UAS ANPRM

- (목적) 적대국(中 포함)의 드론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검토
 - * 특정 기업 언급은 없으나, 문서 내 “중국 및 러시아 연관 종속(foreign adversaries, particular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단어 사용

■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드론 지배력 강화(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행정명령 (2025.6월) 발표

- (목적) 美산 드론 기술 상용화 가속, 자국산 제조 우선 및 해외 의존도 축소

● (주요 내용)

- 외국 적대국(Foreign Adversaries)으로부터 드론·관련 부품 연방 정부 조달 전면 배제
- 국방부, 교통부 등 각 부처의 조달 계약에서 “미국산 우선구매 규정” 적용 확대
- 중국산 드론의 민간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 표명 또는 추가 규제 가능성
- 중국산 드론의 제3국 공급 차단을 위한 동맹국과의 수출통제 공조 강조 등

4. 다자체제 드론 수출통제 동향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 체제(WA) 등 다자체제의 드론 관련 수출통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민간용 드론의 군사적 활용 증가)을 기점으로 구분

● (러-우 전쟁 이전) 바세나르 체제에서는 전통적 군사기술 중심 드론 통제

- 상용 저가형 드론(Commercial Off-The-Shelf)은 통제 사각지대에 위치

※ (통제 기준) MTCR Category I & II 기술 요소에 해당 또는 바세나르 Munition List 및 Dual-Use List

● (러-우 전쟁 이후) 상업용 드론이 군사작전에 활용됨에 따라 ▲드론 및 관련 부품·기술 분류 구체화 ▲신규 기술 적용 및 사이버 보안 요소 포함 등 통제 범위 확대

- 드론 기체 뿐만 아니라, 센서, 카메라, 통신장비, 자율 비행 SW 등 핵심 부품과 기술 별도 명시

※ 과거에는 '무인항공기'라는 포괄적 개념 / 현재는 세부 기술 단위로 쪼개어 수출통제 대상으로 분류

- 민간 →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또는 드론 관련 자율비행·AI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가 신기술로 추가돼 수출통제 목록에 반영 / 사이버보안 위협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통신 암호화 기술도 관리 대상

● 기존 바세나르 체제는 만장일치제 기반 운영되어 왔으나, 러시아(회원국)의 반대로 민감 품목 통제 확대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며 교착상태 → 美 주도 러시아를 배제한 '컨센서스-1(C-1)' '23년 출범

- 상용 센서·카메라·수신기 등 민감 부품이 중국·제3국 경유를 통해 제재 대상국(러시아 등)으로 재수출되는 사례 빈발

● 중국은 자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비판 여론과 통제 강화 요구가 확산되자, 수출통제법 개정 및 이중용도 부품에 대한 선별적 통제를 통해 맞대응

※ 中 정부는 수출 품목이 민간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입장 유지함에 따라 제3국 경유 우회수출, 민간 위장 수출 등 통제 회피 사례 다수 발생

5.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 정책

- 미국이 자국 드론 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각종 제재 조치를 본격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단계적 강화

※ 중국은 드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면서도, 고성능 항법 시스템, AI 칩, 통신 모듈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전략적 수출통제 병행

- (1차) 중국은 美 「수출관리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수출통제법*」 제정(2020년)

* 이중용도 물자·기술·서비스의 수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군사용 전용 가능성,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임시 통제' 및 '수출금지 대상 국가' 지정 조항도 포함

- (2차)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행정규정을 개정(2023~2024년)하여 드론 기체 및 관련 부품*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 및 사전 허가 절차 적용(2024.1월 시행)

* 탄소섬유, 고정밀 항법장치, 적외선 센서 등

- (3차) 무인항공기(드론) 부품 수출통제 최적화 및 조정 조치 발표를 통해 고성능 드론 엔진, AI 제어 시스템, 적외선·레이저 장비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통제 강화(2024.7.31. / 9.1일 시행)

- 다만, 소비형 민간용 드론 일부 수출 규제 완화하여 선별적 통제 체계로 조정

→ 2024년 美 국방부의 CCMC, 재무부의 SDN 목록, CISA의 ICTS 위협 지정 등 미국의 中 드론 제조사 제재 확대에 따른 맞대응 성격

6. 시사점

- 미국은 동맹국에도 공동 통제(공급망, 기술이전, 라이선스 등) 참여 압박 할 것으로 예상, 우리 정부는 ▲이중용도 품목 분류체계 정비 ▲핵심 부품·기술 자립화 ▲공급망 연계 전략 등을 검토·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는 WA, MTCR 등 다자체제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다자체제 기준에 따라 드론은 이중용도 전략물자로 분류 / (국내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및 하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최근 동향)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정세 등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심사 강화 추세 / 우리 기업 또한 드론용 부품(센서, 통신 모듈 등)을 수출하는 경우 美 수출통제 체계와 연계 규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바, 주요 공급처가 美·EU에 집중된 기업은 수출제한, 세컨더리 제재,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에 대비할 필요

-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예, 정밀 센서 등) 별도 식별하여 전용 코드 및 통제 기준 마련, 최종 용도(end use) 및 최종 사용자(end-user) 분석 강화, 드론 관련 기업 대상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등
- 보안 리스크 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AI 기반 영상식별 시스템, 고정밀 GPS 항법장치, 고출력 배터리 등) 전략적 자립기술로 선정 및 국산화 로드맵 수립
 - 핵심 부품·기술 참여 기업 대상 R&D 비용 세액공제, 정부 주도 수요 창출(조달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 도입
- 다자체제(MTCR, 바세나르 등) 내 통제기준 강화하기 위해, 드론 기술 선도국(美·EU·日 등)과의 수출통제 정책 조율 메커니즘 내실화할 필요

참 고

美 부처별 對中 드론 규제 주요 조치 ※ 행정명령 조치 포함

시점	부처	조치명	대상 기업	주요 내용
‘20.11월	백악관 (트럼프)	“중국 군사 기업(CCMC) 투자 제한” 행정명령 13959호 발표	Hikvision, Huawei, China Mobile 등	중국 군사 기업(CCMC)투자 제한 / 美 자본이 중국 군사력 증강 활용에 차단 목적
‘20.12월	상무부 (BIS)	Entity List 등재	DJI 등 4개사	신장 인권 탄압 연루로 미국산 기술·부품 수출 전면 금지 / 미국 기업이 수출 또는 기술 이전 시 라이선스 필요
‘21.1월	백악관 (트럼프)	“특정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미국 보호” 행정명령 13981호 발표	중국산 드론 전반	연방기관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 명시 ※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21년 미국에서 소비되는 UAS의 75% 이상이 中 업체 제품
‘21.6월	백악관 (바이든)	“중국 특정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행정명령 14032호 발표	얼굴인식·감시 기술 기업	신규 투자 금지 + 기존 보유 1년 내 매각 가능 (E.O. 13959 보완 및 확대)
‘21.7월	국방부 (DoD)	CCMC 리스트 등재	DJI 외 3개사	中 군민융합(MCF) 연계 판단, 국방조달 및 軍 계약 제한
‘21.12월	재무부 (OFAC)	NS-CMIC 리스트 등재	DJI	미국인 투자 금지, 연기금·펀드의 투자 배제 조치
‘22.10월 ~	상무부	Entity List 확대	DJI 관련 계열사	DJI 계열사까지 통제 범위 확장 (총 9개社 이상)
‘23.2월	국방부	CCMC 리스트 확대	DJI, Autel 포함 다수	NDAА 연례 보고 반영
‘24.1월	상무부	ICTS 공급망 보호 규정 사전예고	중국산 드론 전반	중국산 드론에 대한 통신 기술 제한 예고 (행정명령 13873 의거)
‘25.6월	백악관 (트럼프)	‘미국의 드론 지배력 강화’ 행정명령 발표	중국산 드론 전반	국산 드론 산업 육성 및 공공조달 내 중국産 완전 배제 등

출처 : 저자 종합 정리

참고문헌

- 글로벌이코노믹(신민철) 2025.6.24. "中 드론 부품 수출 제한 '직격탄'... 美 수입 가격 '3배 폭등', 공급망 혼란 가중"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2413181923060c8c1c064d_1
-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승주(2024.7.1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수출통제와 겸용 기술의 확산" 이슈브리핑
- 연합뉴스(김문성) 2023.11.5. "하마스 9년 전보다 강해졌다... "드론·미사일로 무장"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5034300009>
- 연합뉴스(전명훈) 2025.7.13. "우크라 최전선 보니...이젠 드론 없으면 전쟁 아예 못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3036600009>
- 조선일보(이철민) 2024.7.3. "최강 미 해군은 왜 최빈국 예멘 후티 반군을 막지 못했나"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7/03/4P5UG5VPBVBGJM2NPOLR7RLPVA/>
- 중앙일보(정황지) 2024.5.22. "화웨이·틱톡 다음은? 美제재에 떨고있는 세계1위 드론 업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984>
- 중앙일보(장구슬) 2025.6.13. "이란 "가혹한 응징" 시작됐다...이스라엘에 드론 100대 공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597>
- 헤럴드경제 김영철 (2024.6.26.) "美 상업용 드론 90%가 중국산...하원, 기업 불러 증언 청취"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24157>
- CISA. (2024, January 17). Cybersecurity guidance: Chinese-manufactured UAS.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https://www.cisa.gov/resources-tools/resources/cybersecurity-guidance-chinese-manufactured-uas>
- Conflict Armament Research (2025.7월) Evidencing commercial components in missile and UAVs
- CSIS. (2025, May 28). The Russia-Ukraine Drone War: Innovation on the frontlines and beyon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analysis/russia-ukraine-drone-war-innovation-frontlines-and-beyond>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24, January 17). Cybersecurity guidance: Chinese-manufactured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 For critical infrastructure owners and operators [Press releas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s://www.cisa.gov/news-events/news/release-cybersecurity-guidance-chinese-manufactured-uas-critical-infrastructure-owners-and-operators>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0, November 12). Executive Order 13959—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The White House Archives.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securities-investments-finance-communist-chinese-military-companies/>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d.). Covered list of equipment and services.
<https://www.fcc.gov/supplychain/coveredlist>

- Federal Register. (2025, January 3). Securing the ICTS supply chain: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PRM).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03/2024-30209/securing-the-information-and-communications-technology-and-services-supply-chain-unmanned-aircraft>
- Fischler, J. (2024, March 20). Congress's plan to outlaw Chinese drones met with protest.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politics/national-security/congress-plan-to-outlaw-chinese-drones-met-with-protest-c95cf1fe>
- KOTRA. (2024.8.7.). 규제 장벽이 완화되고 있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18209
- Lee, Y. (2024, December 17). U.S. Senate to vote on bill that fuels possibility of Chinese drone ban
<https://www.voanews.com/a/us-senate-to-vote-on-bill-that-fuels-possibility-of-chinese-drone-ban-/7905266.html>
- Military Strategy Magazine. (2021). Drones in the Nagorno-Karabakh war: Analyzing the data.
<https://www.militarystrategymagazine.com/article/drones-in-the-nagorno-karabakh-war-analyzing-the-data/>
- OFAC. (2021). Non-SDN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anies List (NS-CMIC List).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11216>
- OFAC. (n.d.). Chinese military companies sanction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chinese-military-companies-sanctions>
- Scott, R. [Rick]. (2022, February 3). Sen. Rick Scott and Rep. Stefanik lead legislation to counter Chinese drones [Press release]. U.S. Senate.
<https://www.rickscott.senate.gov/2022/2/sen-rick-scott-and-rep-stefanik-lead-legislation-to-counter-chinese-drones>
- The White House. (2021, June 3). Fact sheet: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ertain compan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03/fact-sheet-executive-order-addressing-the-threat-from-securities-investments-that-finance-certain-companies-of-the-peoples-republic-of-china/>
- The White House. (2025, June 6).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unleashing-american-drone-dominance/>
- United States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CP. (2024, June 26). Chairman Moolenaar opening remarks 6.26.24 [PDF].
<http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sites/evo-subsite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files/evo-media-document/Chairman%20Moolenaar%20Opening%20Remarks%206.26.24.pdf>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4, December). China's remote sensing, surveying, and mapping industry (Staff Research Report).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2024-12/Chinas_Remote_Sensing.pdf

- U.S. Congress. (2024). H.R.267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2670/text>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0.12.22). Addition of Entities to the Entity Lis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2/22/2020-28031/addition-of-entities-to-the-entity-list-revision-of-entry-on-the-entity-list-and-removal-of-entities>
- U.S. Department of State. (n.d.).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https://www.pmddtc.state.gov/ddtc_public?id=ddtc_kb_article_page&sys_id=fe1f1f7ddbfc930044f9ff621f961987
- U.S. Department of State. (n.d.), MCF One Pager.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05/What-is-MCF-One-Pager.pdf>

저자 소개

안수린 | srann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 미중 기술 경쟁, 신형안보기술,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I & II편,” “미국 상무부의 (AI)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통제,”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위협 인식,” “미국의 수출통제 효과성 및 역효과” 등이 있다.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전문관

1. 배경

- 핵심광물을 활용한 中의 전략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 下, 중국은 국가 광물자원 관리의 기본법인 「광물자원법」을 개정(25.7.1부 시행)
 - 1986년 제정·시행, 1996년 1차 개정 이후 실질적인 개정 無 / 광물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 下, 광물자원 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
- ※ 기존 법안 7장 53개 조항 → 개정안 8장 80개 조항으로 확대

2. 광물자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광물자원 관리 원칙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전략광물자원’에 대한 국가지원 및 비축 의무 조항을 입법화
 - (안보 강조) ▲광물자원 안보 보장(제1조) ▲총체적 국가안보관 관철(제3조) 등 기존 법안에 부재하던 국가안보 개념 명시
 - (전략광물지원) 국가 지정 ‘전략광물자원’에 대한 전방위적(탐사·채굴·무역·비축·관련 산업 등) 지원 강화 조항 신설(제8조)
 - ※ 개정안은 국무원이 ‘전략광물자원’ 목록을 확정 및 조정하도록 명시(제8조) / 상금 미발표
 - (비축체계 구축) 광물자원 비축 및 긴급 대응 규정(제5장)을 신설하여,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축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광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리 기능 강화
 - (정책 조정) 국가발전계획 등을 고려한 광물자원 계획을 수립(제9조)하여 광물자원 정책과 국가 핵심 정책 간 연계성 강화
 - (매장자원 관리) 국가 지질조사체계를 구축 및 완비(제7조) 등을 명시하여, 중국 내 매장 광물자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분석 역할 강화

[中 광물자원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법안	개정안
법안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광물자원 탐사 등록 및 채굴 허가 제3장 광물 자원 탐사 제4장 광물자원의 개발 제5장 집단광산기업 및 개인광산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총 7장, 53개 조항으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광업권 제3장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제4장 광산지역 생태복원(신설) 제5장 광물자원 비축 및 긴급 대응(신설)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총 8장, 80개 조항으로 구성)
총칙	(입법 목적 및 원칙) 광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제1조) 국가는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보장(제3조) (관리 부처) 국무원은 전국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 담당(제11조)	(입법 목적 및 원칙)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 광물자원의 안보를 보장(제1조) 광물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련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관철(제3조) (관리 부처) 국무원은 광물 목록 및 전략 광물자원 목록 확정 및 조정(제2조, 제8조) 전국의 광물자원 탐사, 채굴 및 생태복원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 담당(제14조)
전략광물자원 (戰略性 鑛産資源) 관련 조항 (신설)	無	(전략광물 지원) 국가는 전략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무역, 비축에 대한 지원 강화(제8조) (산업 지원) 전략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능력의 증가 및 전략광물자원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하여 광물자원의 안보수준을 향상(제8조) (채굴) 전략광물자원은 국가 규정에 따른 보호 채굴 실시(제8조) (비축체계) 국가는 전략광물자원 비축체계를 강화하고(제10조), 관련 부처는 규정에 따라 전략광물자원 비축시설 건설 강화(제51조) (전략 광물 비축 의무) 전략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광산권자는 비축 책임 이행, 비상 생산 증가에 대한 수요 보장(제52조)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광물자원 탐사·개발 계획) 국가는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하여 통일적 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적 탐사, 합리적 개발 및 종합적 이용 정책 실시(제7조)	(광물자원 탐사·개발 계획) 국가는 지질조사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며(제7조), 국무원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가발전계획, 국가국토공간계획, 지질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 광물자원 계획을 수립(제9조)

자료 : 저자 비공식 번역, 정리본

3. 향후 전망

■ 中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제도 마련을 통해 법안 본격 시행 예정

- (후속 법안 연계) 中 자연자원부는 ‘광물자원법 실시조례(초안)’ 및 ‘광물 자원 세부 목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완료(25.4.15일 / 6.15일 완료, 시행일 미정)
- (비축체계 강화) ‘전략광물자원’ 비축 조항이 신설된바 ▲비축 관리 구체 방안 마련 ▲비축 대상으로 명시된 ‘전략광물자원’ 목록 정비 등 예상

※ 中 정부는 2016년 국가광물자원 계획(2016-2020)을 통해 ‘전략광물자원’ 24종을 지정했으나, 법안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반영한 ‘전략광물자원’ 목록 정비 예상

■ 향후 법안 시행에 따른 中 정부의 광물자원 관리체계 구축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정책 수단 확대) 법안 본격시행에 따라, 안보 논리에 입각한 中 정부의 비시장적 정책(전략광물자원 비축, 수출제한, 中 기업 우선 조달 등) 활용이 확대될 경우, 우리 산업의 안정적 광물자원 조달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 가능

참 고

中 광물자원법 개정안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입법 목적 및 원칙) 국가 광물자원의 안보를 보장하고(제1조) 광물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련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관철(제3조) • (관리 주체) 국무원은 광물 목록 및 전략광물자원 목록을 확정 및 조정하고(제2조, 제8조) 국가를 대표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제4조)하며 전국의 광물자원 탐사, 채굴 및 생태복원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 담당(제14조) • (전략광물자원 지원) 전략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무역, 비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능력의 증가 및 전략적광물자원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제8조) 전략광물자원은 국가 규정에 따른 보호 채굴 실시(제8조) • (국제협력) 국가는 평등, 호혜, 협력과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광물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15조)
제2장 광업권	• (채굴권 양도) 채굴권 양도 절차를 최적화하고, 채굴권 양도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강화의 실제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18조)
제3장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 (광물자원 계획 체계화) (현급, 시급 정부는) 기초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중앙, 성급 정부는) 전략 광물자원 및 중점광산지역에 대한 탐사 조사 및 평가를 실시(제30조) • (매장자원 관리) 국가는 매장된 광물자원의 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 방안은 국무원이 제정(제40조)
제4장 광산지역 생태복원 *신설	• (생태복원 의무) 광업권자는 법에 따라 생태복원 의무 이행(제45조) / 광물자원 채굴 전, 채굴권자의 생태복원 계획 작성 및 제출 및 국가 승인 필요(제46조)

구분	주요 내용
제5장 :광물자원 비축 및 긴급 대응 *신설	• (비축체계) 국가는 전략광물자원 비축체계를 구축 및 조정하고(제50조), 전략광물자원 비축시설 건설 강화(제51조) • (전략광물자원 비축 의무) 전략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광산권자는 비축 책임 이행, 비상 생산 증가에 대한 수요 보장(제52조) • (전략광물자원 비축 관리) 국무원은 매장량, 분포, 희소성, 중요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광물자원 비축지를 결정하고 관련 관리방안 제정(제53조) • (조기경보 체계) 국가는 광물자원 공급 안전 예측 및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광물 제품의 공급 및 수요 변화, 가격 변동 등 안전 위험 상황을 적시에 예측 및 경고(제54조)
제6장 :감독·관리	• (조사평가제도) 광물자원 개발 및 이용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 현황에 대한 총괄 및 분석 강화, 정기 평가 실시(제58조) • (감독 관리 체계) 국무원은 국가 광물자원 감독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제59조)
제7장 :법적 책임	• (법적 책임) 탐사권 및 채굴권을 취득하지 않고, 광물자원을 탐사 및 채굴한 자는 벌금 부과(제63조, 64조) / 승인 없이 전략광물자원을 은닉한 경우 벌금 부과(제65조)
제8장 :부칙	• (보충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광물자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 추궁 가능(제78조)

출처: 저자 비공식 번역, 정리본

참고문헌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2025年01月10日 第15版)
- 自然资源部网站(2024.11.10.), 新矿产资源法的十大亮点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전문관

※ 원문 : Pasamehmetoglu, K. (2025.5.14.). The United States' role in managing the nuclear fuel cycle. Issue Brief. Atlantic Council.

1. 서론

■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및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에 필수적인바,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사용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생에너지의 제한적 역할 등을 고려 시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생태계 전반의 성장이 필수적

* 2023년 COP28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약 1,000GWe)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목표 제시 / 일부 연구에서는 6,000GW까지 확대 필요성도 제기

- 이러한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지형 형성 과정에서, 미국이 리더십 발휘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핵연료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국 국가안보 및 여타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등을 확보할 필요성 존재

2.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학

■ 원자력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수요 대부분을 충족 가능한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 수립 및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

- 핵연료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여타 에너지원과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원자력 에너지는 기술 비용(technology cost)이 높아 여타 에너지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전체 수명 주기 비용(total lifecycle cost)을 고려하면 다른 청정에너지원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등의 주요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재정 지원 정책이 개발·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 할 필요성 다대

-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여 대규모 투자 및 수출 시장 확대 중 /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식과 차별되는 새로운 재정 지원 정책의 시행 및 막대한 초기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요구

3.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 및 한계

-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은 러시아 및 중국 대비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
 - 러시아는 현재 11개 국가에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등 최소 30개 국가와 MOU 또는 정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파트너십 구축 중
 -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회수를 포함해 원자로의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제공
 -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등 잠재 시장의 원자력 인프라 조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 경수로 20기 이상을 건설 중 / 아울러, 폐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사용하는 핵연료주기 순환을 목표로 첨단 원자로 개발에도 투자
 - 반면, 미국은 2050년까지 자국 내 200GWe의 원자력 발전 용량 추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글로벌 시장 영향력은 다소 부족
 - 미국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모델 혁신, 정책 조정, 핵연료주기 전략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전망
- 미국이 원자력 부문에서 리더십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강한 기대가 존재하나, 리더십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은 아직 부재
 - 미국은 20세기 후반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LWR)의 확산을 주도하였던바, 미국의 리더십 재건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그 전략은 미비한 상황
 -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문제 등을 둘러싼 비확산 진영(nonproliferation community)과 첨단 원자로 개발 진영(advanced-reactor community)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종합적인 리더십 확보 전략 수립에 고충
 - 비확산 진영은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수로 수준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으로 인식 / 첨단 원자로 진영이 개발하는 신규 원자로 및 재처리 기술에 대한 추가 위험(incremental risk) 및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
- 미국의 원자력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증가나 경제적 이익 확보를 넘어,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 신규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을 제공하여야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 선행 핵연료주기에서의 초기 우라늄 농축, 후행 핵연료 주기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핵연료 주기 전반에서의 혁신 생태계 역량 강화가 긴요
 - 또한, ▲민간 부문 역량 강화 ▲공급망 회복력 확보 ▲우방·동맹국 협력 확대 ▲높은 수준의 규제 체계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리더십 재건을 모색
 - 특히 유사입장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원자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흥 시장에 러시아, 중국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4. 정책 제언

- 미국법상 사용후핵연료는 미 정부의 소유인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수립 · 실행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략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재활용 시설의 투자, 소유 및 운영 주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시 소유권 이전 방식 ▲2차 폐기물의 처리 ▲국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수적
 - 이외에도, 유카 마운틴(Yucca Mountain) 중심의 핵 폐기물 정책을 수정 · 보완하고, 기술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핵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을 도모
- 핵연료주기 정책 방안에 대해 비확산 진영과 기술 개발 진영 간 공론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 장기적 핵연료주기 전략 로드맵 도출을 모색
 - 비확산 진영과 기술 개발 진영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 확보 전략 및 글로벌 에너지 전환 기조에 부합하는 핵연료주기 정책을 도출할 필요
 - ※ 두 진영이 모두 동의하는 확산 위험 평가 모형(proliferation risk model)을 설계한 후, 각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에 대한 위험과 편익을 비교 · 평가해 판단하는 방식 제시
 - 완전한 합의가 어렵더라도, 정책 결정자에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편익 비교분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유의미할 것으로 평가 / 정책 결정자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 Review 25-9호, 2025)”,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경제안보 Review 24-18호, 2024)”,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KDI, 2022)”가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7.2.~2025.7.16.)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트럼프 대통령, 국가별 상호관세율 관련 서한 공개(7.7)

-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8.1일부터 적용될 관세율(기본+상호) 통보 서한 공개

- 한국은 기존과 동일한 25%의 관세율을 8월 1일부터 적용

※ 이외 서한은 ▲보복시 보복관세율 만큼 해당국 관세율 인상 ▲향후 관세·비관세 정책 등 무역장벽 철폐시 관세율 조정 고려 가능 등의 내용 포함

- (평가) 금번 발표로 8.1일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추가 협상 기간 확보

- 금번 발표 이후 美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관세율 조정 조치 연장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7.9일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1일 오전 12시 1분까지 연장(10%의 기본 관세만 적용)

■ 트럼프 대통령,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7.9)

-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을 통해 금년 8월 1일부터 구리에 대해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7.9일)

-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未언급 / 8월 1일 발표 가능성 제기

* 러트닉 상무장관은 향후 포고문 서명 등 통상적 절차를 거쳐 7월 말 내지 8.1.부터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개시 예상(7.8, CNBC 인터뷰)

-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내 구리 산업 재구축 강조

- 미국 내 구리 생산 비중은 미국 전체 소비량의 절반(55%) 수준 / 미국 내 대규모 신규 구리 광산 개발은 10년 이상 중단된 상태(Reuters, 7.10)

-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한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지난해 기준 美의 구리 수입 중 한국 비중은 3.5% / 美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4년 미국의 주요 구리 수입국은 칠레,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

■ **美 상무부,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 결정(7.17)**

- (개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포함 중국산 활성 음극 물질에 대해 93.5%의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 결정 / 최종결과는 12월 5일 발표 예정

- 美 흑연 생산 업계의 청원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금년 1월 조사 개시 / 조사 결과 中 수출업체들의 불공정 보조금 혜택 판단
- 동 예비 결정으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총 관세율은 약 160%*에 도달

* ▲Trump 행정부의 對中 상호관세 30% ▲상무부가 연초 부과한 상계관세 11.5%, ▲Biden 행정부 당시 301조 관세 25% ▲금번 관세 93.5%

- (평가)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생산비용 증가 불가피

- 국내 배터리업체(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의 미국 현지 생산에도 영향 가능

■ **美 상무부, 태양광 및 무인항공기 관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의견수렴 공고 게시(7.14)**

- (개요)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상품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관련 부품·구성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7.1~) / 8월 5일까지 의견수렴 예정

- 관세 부과 대상 구체품목은 상금 未발표

- (평가) 관세 부과를 통한 태양광·무인항공기 산업의 對中 의존도 완화 목적

- 美 현지 생산 중인 비중국 기업의 반사이익이 제기되나, 관세 부과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가능성도 불배제

※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국내 태양광 업체는 미국내 현지 공장 계획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6.27.	[플랫폼] 전인대 상무위, 「반부정당경쟁법」개정안 통과 : (주요 내용) ▲플랫폼 출혈 경쟁 및 덤핑 방지 ▲플랫폼 공정경쟁 의무 규정 ▲대형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공정경쟁 심사제도 법제화 등
	7.3.	[환경] 제6회 상하이협력기구(SCO) 환경장관회의 개최(텐진) : (주제) SCO 회원국 간 녹색·지속가능·저배출 발전 협력 촉진
	7.3.	[정부조달] 재정부, EU 수입 의료장비의 정부조달 참여 제한 결정 발표 : EU 집행위의 의료장비 공공조달 중 기업 참여 제한(6.20.) 관련 상호조치 도입
	7.4.	[세제] 국가세무총국, 2025.1~5월 과학기술 혁신 및 제조업 발전 지원 주요 정책에 따른 감세·비용 인하 및 환급 규모 발표 : 2025.1~5월 간 국가 핵심 산업 중심 6,361억 위안(약 120조 8,590억 원) 지원
	7.5.	[조선] 상하이증권거래소,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중공 간 합병 거래 심사 통과 : 총자산 75조 원 규모 세계 최대 조선사(상장회사) 출범
	7.8.	[경제] 인민일보, 골드만삭스·도이체뱅크·모건스탠리 등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
	7.9.	[수출통제] 상무부, 대만지역 기업 8개사 수출통제목록에 추가 : 대만의 항공우주·방산·조선 관련 기업 대상 수출통제 발표
	7.14.	[수출입] 해관총서,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통계 발표
미국	6.24.	[국방] Mike Lee 상원의원(공화/유타), 동맹 부담금 보고 법안* 대표 발의 * Allied Burden Sharing Report Act
	6.26.	[관세] Trump 대통령, 인도와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 시사
	6.30.	[제재] Trump 대통령, 對시리아 제재 해제 행정명령 서명
	7.1.	[쿼드] Quad 외교장관 회의 개최(워싱턴 D.C.) : 국무부, Quad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 발표
	7.1.	[플랫폼] 의회,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등 대응 촉구 서한 발송
	7.2.	[관세] 미국-베트남 관세 협상 타결 발표 :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환적 품목에 40% 관세 부과
	7.2.	[협정] Ron Wyden 상원 재무위 간사(민주/오리건), 구속력 있는 무역 협정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7.2.	[우크라] Reuters, 국방부의 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보류 가능성 보도
	7.3.	[제재] 행정부, 이란 석유 거래 네트워크 및 헤즈볼라 금융 관계자 대상 제재 발표
	7.3.	[반도체] CNN, 상무부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중국 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고 보도
	7.4.	[예산] 하원, 예산조정법안 최종 통과 및 백악관 송부 : 상원 통과(7.1.) 법안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
	7.6.	[BRICS] Trump 대통령, 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예외 없이 10% 추가 관세 부과 경고

국가	일자	내용
미국	7.7.	[관세] Trump 대통령, 국가별 상호관세율 관련 서한 공개 : ▲한국 25% ▲일본 25% ▲태국 36% ▲말린 25% ▲인니 32% 등
	7.8.	[관세] Trump 대통령,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예고 : 구리 50% 관세 발표 예정 시사
	7.8.	[우크라] Mike Rogers 하원 군사위원장,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재개 결정 환영 성명
	7.9.	[제재] 행정부, 이란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 대상 제재 발표 : 이란산 석유 판매에 관여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 가담 기업 대상 신규 제재 발표
	7.9.	[관세] Trump 대통령, 8개국 관세율 통보 서한 추가 공개 : (관세율 변화) 필리핀(17%→20%), 브루나이(24%→25%), 몰도바(31%→25%), 알제리(30% 동일), 이라크(39%→30%), 리비아(31%→30%), 스리랑카(44%→30%), 브라질(10%→50%)
	7.9.	[관세] Trump 대통령,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8.1.일부로 구리에 대해 50% 관세 발효
	7.10.	[관세] Trump 대통령, 캐나다에 35% 관세 부과 서한 공개 : 유제품 쿼터, 펜타닐 밀매,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캐나다에 35% 관세 부과
	7.10.	[관세] Bloomberg, 구리 50% 관세 대상에 ▲전력망 ▲군사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제품 및 반제품 포함 가능성 보도
	7.12.	[관세] Trump 대통령, EU와 멕시코에 각각 부과할 30% 관세율(8.1. 발효) 통보 서한 공개
	7.14.	[관세] 상무부,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 제품에 대한 17.09% 관세 부과 결정 발표
일본	7.14.	[국가안보] Trump 대통령,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상품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그 부품·구성품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수렴 공고
	7.15.	[협정] Trump 대통령, 인도네시아와 예비 무역 협정 체결 발표
	7.3.	[관세] CNBC, 美 Bessent 재무장관이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세 협상에 국내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발언 보도
	7.4.	[희토류] Reuters, 정부가 희토류 추출을 위해 미나미토리섬 주변 심해에서 약 1,600만톤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진흙을 채굴 예정이라고 보도
	7.8.	[협정] 일본-캐나다 정보보호협정 서명
	7.9.	[희토류] 닛케이,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액 급감 보도 : 2025.5월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
	7.10.	[관세] 경단련 회장, 美 Trump 행정부 對日 25% 상호관세 유감 표명
EU	7.11.	[협정] 일본-중국 동물위생검역협정 발효
	7.15.	[정상회담] 요미우리신문, 일본-EU 정상회담 공동성명(안) 보도
EU	7.2.	[기후] 집행위,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개정안 발표 :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목표 설정

국가	일자	내용
EU	7.4.	[배터리] 집행위,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활용한 EU 역내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 프로젝트」 지원 대상 선정 : LG에너지솔루션社 프로젝트 포함 6개 프로젝트 선정 발표 및 총 8억 5,200만 유로 보조금 지급 결정
	7.8.	[산업] 집행위, 유럽 화학산업 행동계획 발표 : EU 화학산업 경쟁력과 현대화 촉진을 위한 4가지 분야(▲회복탄력성 및 공평한 경쟁의 장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및 탈탄소화 ▲선도시장 및 혁신 ▲PFAS) 조치 제안
	7.10.	[배터리] 유럽의회, EU 배터리 규정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 연기 제안 채택 : 배터리 공급망 실사 의무 2025년→2027년 연기 추진
	7.12.	[관세] Trump 대통령, EU에 30% 상호관세 부과(8.1. 발효) 서한 공개 : EU 회원국, 강한 우려 표명 및 공동 대응 기조 강조*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미 위협 대응을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거론(7.12.)
	7.14.	[관세] 집행위 Sefcovic 집행위원, 美 관세 정책 관련 G7 공동 대응 제안
	7.14.	[관세] 집행위, 미국에 대한 2차 보복관세 목록* EU 회원국들에 공식 제시 * 총 720억 유로 규모 미국산 수입품 대상
캐나다	6.27.	[철강] 정부, FTA 미체결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할당제도 시행 :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의 캐나다 우회 수출 차단 등 목적
	7.1.	[디지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캐나다 정부의 디지털세 철회 결정(6.29.)에 따라 양국 간 무역 협상 즉시 재개 공식 발표
	7.4.	[자동차] The Globe and Mail, 캐나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Carney 총리에 전기차 의무판매제 철회 요청했다고 보도
	7.10.	[관세] Trump 대통령, 8.1.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35% 관세 부과 발표 : USMCA 규정 부합 품목 예외 / 에너지·비료 10% 관세 유지
네덜란드	7.1.	[경제안보] 정부, 경제안보 정책 종합보고서 발표
스위스	7.2.	[FTA] EFTA-MERCOSUR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브라질	7.6.	[BRICS] BRICS 정상회의 개최 및 BRICS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 발표
	7.9.	[관세] Trump 대통령, 브라질 수출품에 50% 관세 부과 발표(8.1. 발효)
	7.10.	[관세] Lula 대통령, 美 행정부의 5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공식 제소 및 제소 실패 시 미국에 비례적 보복(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조치) 계획 표명 : Lula 대통령, 경제상호주의법 시행령 서명·발표(7.15.) 및 부처 간 위원회 설치
말레이시아	7.7.	[관세] 美 Trump 행정부, 말레이시아에 25%* 상호관세율 적용 통지 * 최초 상호관세율(4.2.) 24% 대비 1%p 상향 조정
	7.11.	[반도체] Reuters, 정부가 미국산 고성능 AI 반도체 칩의 수출·경유시 무역 허가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베트남	7.2.	[협상] 베트남-미국 무역 협상 합의 발표 :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호혜적인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 Fair, Balanced, and Reciprocal Trade Agreement Framework)’ 합의

국가	일자	내용
인도네시아	6.29.	[배터리] CATL, 인도네시아 배터리 생태계 구축사업 Dragon Project* 착공식 개최 * (투자액 규모) ▲채굴 및 제련 47억 달러 ▲배터리 생산 12억 달러 / 총 59억 달러
	6.30.	[수입규제] Airlangga 경제조정장관, 1차 수입 규제 완화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 공식 발표 : 임산물, 비료, 플라스틱 원료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예정
필리핀	7.9.	[관세] 美 Trump 행정부, 필리핀에 20%* 상호관세를 통지 * 최초 상호관세율(4.2) 17% 대비 3%p 상향 조정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7.7.	[에너지] 백악관, 외국 통제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종료 행정명령* 발표 * 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 Controlled Energy Sources
캐나다	7.3.	[LNG] Energy Intelligence, 캐나다산 LNG 첫 한국행 운항 시작 보도
독일	7.1.	[가스] Reiche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가스비상계획 경보단계 해제 : 2022.6.23일부터 시행 중이던 가스비상계획의 '경보단계' 해제 및 '조기경보단계'로 하향 조정
루마니아	7.1.	[전력] 정부, 전기요금 상한제 종료 : 전기요금 kWh당 약 1.5 Ron까지 상승 예상
	7.3.	[가스] 남동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OMV Petrom社, 루마니아 스피네니(Spineni) 지역 신규 천연가스 매장지 발견 발표
멕시코	6.21.	[LNG] 러시아, 멕시코에 LNG 공급 등 에너지 협력 제안
호주	6.30.	[가스] 정부, ▲가스 시장 행동강령 ▲국내가스안보메커니즘(ADGSM) ▲정부-LNG 업체 간 협약(HOA) 등 현행 주요 가스 정책 및 주요 시장 당국의 역할 및 권한 등 관련 종합 검토 절차 착수
	7.1.	[가스] 산업과학자원부, 2025년 4분기 가스수출제한조치 미발동 발표
필리핀	6.27.	[원자력] 에너지부, '선도 원전 프로젝트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대만	7.12.	[가스] Reuters, 국영 석유기업 대만중유공사(CPC)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美 셰일가스 생산 자산 매입을 검토 중이라 보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 · 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 · 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25-11호 (2025.6.13.)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 : 지경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안보적 함의	이재원
	현안	경제안보적 관점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분석	임산호
	연구동향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평화와 재건을 위한 부실한 기반」	황지현
25-12호 (2025.6.27.)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수출통제: 미국과 인도의 우선순위 간 긴장 완화」	안수린
25-13호 (2025.7.11.)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Rhodium Group 보고서]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e 2025) 전략은 성공했는가?	안수린
25-14호 (2025.7.25.)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